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2서식] <개정 2026. 6. 17.>

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[ ] 등록 [ ] 갱신 [ ] 변경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점포 개요	소속구분	[ ]전통시장 [ ]상점가 [ ]골목형상점가 [ ]상권활성화구역 [ ]자율상권구역 [ ]백년소상공인	
	소속 시장(상점가 등) 명		
	점포명		사업자번호
	점포주소		
	사업형태	사업자([ ]개인 [ ]법인) [ ]개인(노점)	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
	연락처	일반전화( ), 휴대전화( )	
	대표자 성명		대표자 주민등록번호

구역 내 영업사실 확인	[ ]상인회장(또는 [ ]지방자치단체 공무원) (인)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4제1항·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점포의 내·외부 현장 사진 각 1부(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함) 2.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노점 상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(노점 상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) 2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)	

유의사항

1. 소속구분 란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해당 항목에 대해 모두 √표를 합니다.
2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(아래 각 호의 사항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사업자등록증(노점 상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)
2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하나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처리절차

신청인	처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
신청서 작성 ▶	접수
	▼
◀ 통보	가맹점 등록 제한업종, 매출액 제한 해당 여부 등 검토
	▼
	등록요건 부합 시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절차 수행